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9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담배(궐련)제조자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202351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경 윤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3
-----------------	---

I. 개요

1. 정부제출안(의안번호 제220235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정부
- (2) 제 안 일 : 2024. 7. 29.
- (3) 회 부 일 : 2024. 7.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에 따른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폐지하면서, 폐지분인 궤련 20개비당 5원만큼 담배제조업자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1))가 판매하는 쉼련에 20개비당 841원을 부과되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제조하는 자에게는 20개비당 846원으로 5원 인상하고,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등의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는 20개비당 841원으로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 ----- -----

1) 「지방세법」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 3. (생략)

4. “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

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7. “소매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8. 삭제 <2020. 12. 29.>

9. 삭제 <2020. 12. 29.>

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u>퀄런: 20개비당 841원</u> 2. ~ 9. (생략) ② ~ ⑦ (생략)	----- ----- ----- ----- ----- ----- ----- -----. 1. <u>퀄런</u> 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가목에 따른 제조자의 경우: <u>20개비당 846원</u> 나. 「지방세법」 제47조제4호나목에 따른 제조자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u>20개비당 841원</u> 2. ~ 9.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	---

2. 주요 검토사항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궤련 제조자를 대상으로 「담배사업법」에 따른 연초초부담금을 폐지하면서 그 폐지분인 궤련 20개비당 5원만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추진배경을 보면, 「담배사업법」(제25조의3제1항²⁾)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³⁾)에 따라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궤련 20개비당 5원)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나, 2024년 3월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이 폐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른 것임.

참고로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자율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353호, 정부제출)이 국회에 제출(2024. 7. 29.)되어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2) 「담배사업법」 제25조의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담배 중 궤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환경보호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초 경작자의 영농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원법인”이라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조업자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담배 중 궤련(「지방세법」 제4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로서,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과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개비당 5원으로 한다.

③·④ (생략)

< 정비 대상 부담금 현황 >

부처	폐지(18개)	감면(14개)
기재부	▪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
교육부	▪ 학교용지부담금	-
외교부	▪ 출국납부금	▪ 국제교류기여금
행안부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	-
문체부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 출국납부금
산업부	▪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농식품부	-	▪ 농지보전부담금
환경부	▪ 수질개선부담금 ▪ 수익자부담금(댐건설법)	▪ 폐기물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용부	-	▪ 장애인 고용부담금
국토부	▪ 원인자부담금 ▪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 시설부담금(산업단지) ▪ 시설부담금(물류단지)	▪ 개발부담금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부담금
해수부	▪ 수산자원부담금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 방제부담금
산림청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자료: 관계부처 합동,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2024. 3. 27.

□ 개정안과 같이 쉼련 제조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폐지하면서 해당 폐지분만큼 쉼련 제조자 대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면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은 약 140억원 증가⁴⁾될 것으로 보이는바, 기금수입 증가분을 활용하여 금연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금번 개정은 부담금 간 단순 내역 조정이며, 담배회사가 부담하는 세금 총액은 동일하므로 담배가격 인상과는 무관함.

4)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증진부담금 5원 인상 시, 기금 수입 증가분은 약 140억 규모임.

<필련5) 제세부담금 부과금액>

(단위: 원)

유형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합계
	기벌보세	부가가치세	담배보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엽연초부담금	
제조자	594	409	1,007	443	841	24.4	5	3,323.4
수입업자	594	409	1,007	443	841	24.4	-	3,318.4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로 존치 근거가 약화된 부담금을 폐지하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의 이관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담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은 필련 제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⁶⁾이어서 필련 제조자에 게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필련 20개비당 841원에서 846원으로 인상되고, 담배수입업자의 경우 현행대로 841원으로 유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기도 함.
- 아울러 개정안은 정부에서 함께 제출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 진행 과정도 고려하여야 하겠음.

5) 필련: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필련제조기를 이용하여 필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호)

6) 일반 필련 담배에는 국세 2종, 지방세 2종, 부담금 3종 등 필련 1갑(20개비) 판매가 4,500원 대비 총액 3,323.4원이 제세부담금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부담금은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엽연초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으로 나뉜다.
이 중 엽연초부담금은 수입판매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3,318.4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됨.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강증진부담금 인상으로 기금 수입 증가분을 활용하여 금연사업을 비롯한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번 개정은 부담금 간 단순 내역 조정으로 담배가격 인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임.

<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구 분	의견 내용
보건복지부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시 기금 수입 증가분을 활용하여 금연 사업을 비롯한 각종 건강증진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부담금 간 단순 내역 조정이므로 담배가격 인상과는 무관함.
한국담배협회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은 부담금 정비 취지(국민·기업 부담 경감)와 상반되고, 현재도 건강증진부담금 수입금의 일부만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추가 자원 조성은 불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0